제31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서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서산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63호)

2026. 10.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전 문 위 원

〈서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63호

○ 제 출 자 : 서산시장

○ 발의일자 : 2026년 10월 8일

○ 회부일자 : 2026년 10월 13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

○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통합지원협의체에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추가(제11조)

나. 협의체의 구성에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자 추가(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Ⅲ. 검토의견

1. 개정목적

○ 본 개정안은「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협의체 위원 구성에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추가하여 지역 내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법적 근거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에서 시장은 관할 구역 내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통합지원협의체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조 제2항에서 협의체의 심의·자문 사항으로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 통합지원 시책 추진,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나.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근거 정비 (안 제11조 제1항)

- 개정안 요지 :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 기관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서산시 지역돌봄 통합지원협의체의 근거를「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과 연계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산시 지역돌봄 통합지원협의체 (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 ---------- ---------- ----------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 ----------.

- 검토의견 : 상위법 제20조 제1항은 시장에게 통합지원협의체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해당 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상위법과 연결하여 규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의 명확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타당함

다. 통합지원 참여자에 대한 근거 신설 (안 제12조 제4항 제6호)

- 개정안 요지 : 통합지원협의체의 위촉직 의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주민자차단체(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추가하려는 사항임

-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 ③ (생 략)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④ ---------- ----------. ------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 ---------- --------. 6.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자

- 검토의견 : 통합돌봄은 의료·요양 등 전문서비스와 일상생활 지원, 주거 및 지역사회 자원 등을 연계하여 제공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행정기관과 기존 서비스 제공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조직과 주민 주체의 참여를 통해 현장 중심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지역사회 내 돌봄서비스 제공과 지역자원 연계에 참여할 수 있고, 주민자치단체(조직)는 주민의 생활 여건과 지역의 돌봄 수요를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협의체 위원 후보군에 포함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특히 지역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주체들의 참여는 지역별 돌봄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고, 공공과 민간 간 협력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1: 지자체 돌봄통합지원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참고조례안) 반영】

○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 충청남도 통합돌봄팀에서 지자체 돌봄통합지원 조례에 대해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참고 조례안을 배포함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 관련부서(경로장애인과)에서 개정하여 관련 조례에 반영함

○ 이번 개정은 단순한 문구 정비가 아니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제도개선의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명확함

5. 종합검토의견

가. 본 개정안은「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근거를 정비하고, 협의체 위원 구성에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추가하려는 사항으로

나.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서비스 제공기관 간 협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조직과 주민 주체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위촉직 위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지역의 돌봄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 자원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다. 또한 서산시 지역 돌봄통합지원 조례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권고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개정하였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라.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